

의안번호	2213480
의 퇴 인	민형배의원
회 답 일	2025.11.25.
추 계 번호	25D5475

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제정안에 따라 시민교육위원회 및 감독위원회 설치·운영, 시·도시민교육센터 설치·운영, 시민교육 기본계획 수립을 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48억 9,4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 동안 총 253억 800만원(연평균 50억 6,2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평균
시민교육위원회 및 감독위원회 설치·운영 (안 제6조 및 안 제8조)	14	14	14	14	14	70	14
시·도시민교육센터 설치·운영(안 제9조)	4,842	4,939	5,038	5,139	5,241	25,200	5,040
시민교육 기본계획 수립 (안 제10조)	38	0	0	0	0	38	8
합 계	4,894	4,953	5,052	5,153	5,255	25,308	5,062

주: 본 추계는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조 (시민교육위원회)	시민교육의 실시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시민교육위원회를 둠	의무규정
2	안 제7조 (시민교육원)	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, 그 밖에 시민교육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한 사항을 정책 집행에 반영하기 위하여 시민교육위원회에 시민교육원을 둠	의무규정
3	안 제8조 (감독위원회)	시민교육과 관련하여 시민교육위원회가 심의·의결하는 사항과 교육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감독위원회를 둠	의무규정

4	안 제9조 (시민교육센터)	시민교육위원회는 지역에서의 시민교육 실시와 지원을 위하여 시·도·시민교육센터와 구·시·군·시민교육센터를 각각 둘 수 있음	재량규정
5	안 제10조 (시민교육 기본 계획)	위원회는 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시민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	의무규정
6	안 제11조 (시민교육 시행 계획 등)	교육원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시민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	의무규정
7	안 제14조 (국가 등의 지원)	국가는 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시민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민교육단체에 보조할 수 있음	재량규정
8	안 제15조(시민교육단체에 대한 금품 기탁 등)	시민교육의 발전을 위한 금품을 기탁한 자 또는 그 금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품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 및 증여세를 면제함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6조 (시민교육위원회)	○	-
2	안 제7조 (시민교육원)	×	- 시민교육원은 원장 1명을 두며, 교육원의 조직·직무 범위 및 공무원의 정원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제정안에 따른 시민교육원의 규모, 업무량 등을 예측하기 어려움 -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‘선거연수원’에서 유권자 및 미래 유권자 등에 대한 민주시민교육 등을 수행 중으로 제정안의 시민교육원과 기능이 일부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기능 조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
3	안 제8조 (감독위원회)	○	-

4	안 제9조 (시민교육센터)	○	-
5	안 제10조 (시민교육 기본계획)	○	-
6	안 제11조 (시민교육 시행계획 등)	-	미대상: 안 제10조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, 기본계획의 내용을 참고하여 기존의 예산과 인력 내에서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
7	안 제14조 (국가 등의 지원)	×	-국가가 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, 지방자치단체는 시민교육단체에 비용을 보조하도록 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 발생이 예상되나, 규정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되어 있어 정확한 추가 재정소요 추계가 곤란함
8	안 제15조(시민교육 단체에 대한 금품 기탁 등)	×	-금품을 기탁한 자 또는 금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해서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따라 세액공제를 하는 경우 재정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, 기탁한 자 또는 기탁된 금품을 교부받은 자의 수, 기부금액 등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추계하기 곤란함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안 제6조에 따른 시민교육위원회와 안 제8조에 따른 감독위원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, 수당과 실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회의참석수당을 추계
 - 시민교육위원회 위원 수는 13명 이내로 하고, 감독위원회는 7명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간위원 수는 위원정수의 3분의 2로 가정하여 각 9명과 5명으로 함
 - 위원회 회의는 분기별 1회씩(연 4회) 개최되는 것으로 가정
- 안 제9조는 시·도 및 구·시·군에 시민교육센터를 각각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, 구·시·군에 설치되는 시민사회지원센터의 수는 예측하기 어려우므로, 시·도에만 시민교육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이를 추계 대상으로 함
- 안 제10조에 따른 시민교육 기본계획은 정부에서 수립한 교육 관련 종합 계획 수립 평균 예산을 준용함

-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추계 첫해인 2027년에 수립한다고 가정
-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¹⁾를 적용함
-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제정안의 부칙과 법안 심사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시민교육위원회 및 감독위원회 설치·운영(안 제6조 및 안 제8조)

- 추계의 전제에 따라 시민교육위원회와 감독위원회의 민간위원 수는 각각 9명과 5명으로 가정하고, 회의는 분기별 1회씩(연 4회) 개최되는 것으로 가정
 - 회의참석수당은 1인당 25만원으로 추계기간동안 동일한 것으로 가정
- 추계 결과, 시민교육위원회 및 감독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는 경우 연간 1,4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2] 시민교육위원회 및 감독위원회 설치·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(단위: 명, 백만원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
시민교육위원회 민간위원 수(a)	9	9	9	9	9	—
감독위원회 민간위원 수(b)	5	5	5	5	5	—
회의 개최 횟수(c)	4	4	4	4	4	—
회의참석수당(d)	0.25	0.25	0.25	0.25	0.25	—
소요비용 ((a+b)×c×d)	14	14	14	14	14	7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1)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

(2025년 11월 기준, 단위: %)

구분	2025	2026	2027	2028	2029	2030	2031
소비자물가상승률(CPI)	2.0	1.9	2.0	2.0	2.0	2.0	2.0

나. 시·도 시민교육센터 설치(안 제9조)

-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와 충청남도에서 제정안 제9조의 시민교육센터와 유사한 형태의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원 중임

[표 3] 시·도별 시민교육센터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연번	지역	조 례	지원조직	2024년 지원 예산
1	경기	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	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지원센터	269
2	충남	충청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	충남시민대학	340

주: 경기와 충남 외의 지방자치단체도 「평생교육법」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, 제정안의 시민교육센터와는 교육의 내용, 성격 등에서 차이가 있음
자료: 각 지방자치단체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

- 본 추계에서는 17개 시·도 중 이미 설치되어 있는 2개 시·도를 제외한 나머지 15개 시·도에 시·도시민교육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이에 따른 재정소요를 추정함

- 신규로 설치되는 15개 시·도에 경기와 충남의 2024년 시민교육센터 지원 예산의 평균액인 305백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

- 추계 결과, 시민교육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15개 시·도에 시민교육센터가 설치되는 경우 2027년 48억 4,2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 동안 총 252억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4] 시·도 시민교육센터의 설치·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
설치 시·도(a, 개)	15	15	15	15	15	—
시·도당 소요비용(b, 백만원)	323	329	336	343	349	—
소요비용(a×b, 백만원)	4,842	4,939	5,038	5,139	5,241	25,20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다. 시민교육 기본계획 수립(안 제10조)

- 안 제10조에 따라 시민교육위원회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추가재정 소요는 2027년 38백만원으로 추계됨
 - 추계의 전제에 따라 교육부에서 최근 실시한 교육진흥 관련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예산 평균금액(38백만원)²⁾을 준용

[표 5]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
기본계획 수립(안 제10조)	38	0	0	0	0	38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라. 추계 결과

-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48억 9,4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 동안 총 253억 8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6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
시민교육위원회 및 감독위원회 설치·운영(안 제6조 및 안 제8조)	14	14	14	14	14	70
시·도시민교육센터 설치·운영(안 제9조)	4,842	4,939	5,038	5,139	5,241	25,200
시민교육 기본계획 수립 (안 제10조)	38	0	0	0	0	38
합 계	4,894	4,953	5,052	5,153	5,255	25,308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2) 교육부의 교육진흥 관련 기본계획 수립 관련 연구용역 평균금액(자료: prism.go.kr)

- 2017년 제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(48백만원), 2022년 제5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마련을 위한 비전 및 주요과제 설정 연구(30백만원)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
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임홍연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홍연	02-6788-4673	limhy@nabo.go.kr